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1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양금희·윤두현·이종성

김영식 · 한무경 · 전주혜

김정재 · 최승재 · 강대식

이 영・황보승희・윤주경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불법촬영물 외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,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·보호시설 연계,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 중 "이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이라 한다)"를 "이하 이항에서 같다),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(이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이라 한다)"로, "피해"를 "피해(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)"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 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 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디지털성범죄피해자"라 한 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(이하 "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·보호시설 연계
- 2.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
- 3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-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24조 중 "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"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·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·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30조 중 "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31조 중 "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"를 "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"통합지원센터"를 "통합지원센터,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제33조 중 "교육훈련시설"을 "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, 교육훈련시설"로, "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"를 "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,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본다. 다만,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수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--가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 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 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-----이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이라 한다)이 항에서 같다), 같은 법 제14조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,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2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한 법률ㅣ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아동・청소년성착취물(이하 이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 조에서 "촬영물등"이라 한다)--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-----피해(촬영물등의 대상 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 하다)-----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<신 설> 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

4조의3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디 지털성범죄피해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(이하 "디지 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"라 한 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1.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 · 보호

- 시설 연계
- 2.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 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
- 3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 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 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상담소, 보호시

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, 상담 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 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.
- 제20조(보수교육의 실시) ①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 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보수(補修)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- 제24조(피해자등의 의사 존중) 상 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 턴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 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.
- 제25조(상담소 · <u>보호시설 및 통</u> 합지원센터의 평가) ① 여성가 족부장관은 상담소 · <u>보호시설</u>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

설,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
범죄피해자지원센터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<u>보호시설, 통합지원</u>
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
<u> 원센터</u>
·.
제20조(보수교육의 실시) ①
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
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(피해자등의 의사 존중)
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
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제25조(상담소・ <u>보호시설・통합</u>
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
<u> 자지원센터</u> 의 평가) ①
보호시설 ·

3년마다 평가하고,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6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제27조(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·가족 ·친지나 긴급전화센터, 상담 소,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 턴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 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③ ~ ⑤ (생 략)
- 제30조(비밀 엄수의 의무) 상담 소, <u>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</u> <u>턴</u>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

	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
	피해자지원센터
	② (현행과 같음)
제	26조(경비의 보조) ①
	 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
	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	· ② (현행과 같음)
	27조(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
	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	(2)
	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
	고프
	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	3. (현행되 끝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	30조(비밀 엄수의 의무)
·	
	<u>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</u>
	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
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1조(경찰관서의 협조)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 서(지구대·파출소 및 출장소 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소 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상담소, 보호시설, 통 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 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 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 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략)

제33조(유사명칭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, <u>교육훈련시설</u>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

제31조(경찰관서의 협조)
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
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
<u>통</u>
합지원센터, 디지털성범죄피해
<u> 자지원센터</u>
,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유사명칭 사용 금지)
<u>디지털성범죄피해</u>
<u>자지원센터, 교육훈련시설</u>

력피해자보호시설, 성폭력피해 자통합지원센터,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.

자통합지원센터, 디지털성범조	
피해자지원센터	-